

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 이후 삶을 위한

2022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서

연금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퇴직연금은 고객의 소중한 퇴직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마인드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교육의 의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교육 실시를 위탁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33조제5항)

미래에셋증권 가입자교육 프로그램

미래에셋증권은 전문화된 퇴직연금교육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자산배분·운용,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퇴직자산을 현명하게 키워나가는 해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대표 홈페이지, 앱에서
온라인 학습



집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서면교육

알림톡, 이메일, 우편을 통한
교육자료 학습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알림톡, 이메일, 우편 중 1회 시행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퇴직연금 제도안내

- 퇴직연금제도,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지연이자
- 표준형DC제도
-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 퇴직연금 담보대출, 중도인출
- 계약이전제도
- 퇴직연금제도 중단·폐지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

노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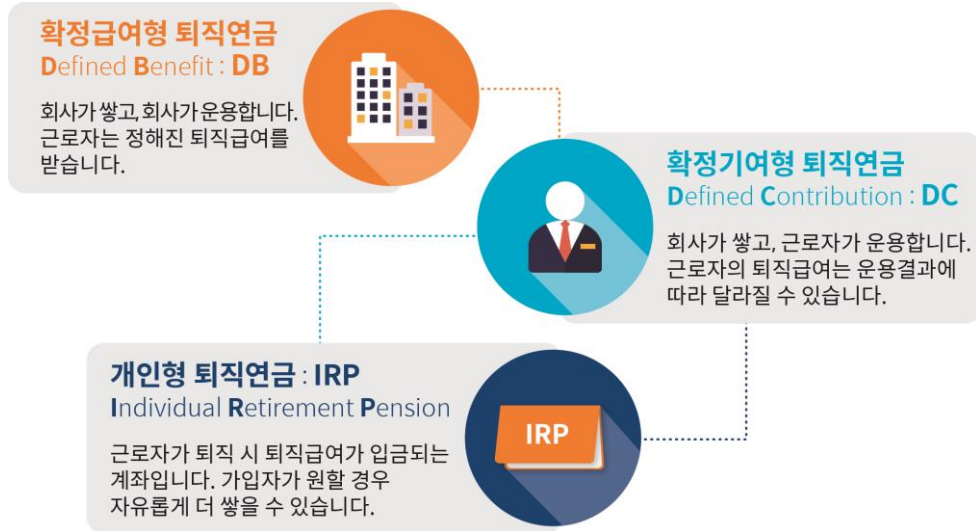
- 노후설계의 중요성
-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 확정기여형(DC) 투자가이드

기타

- 퇴직연금 온라인 서비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성됩니다.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개인형퇴직연금(IRP)
수급요건	퇴직 시		연 금 : 만55세이상/ 수령기간 5년이상 일시금 : 제한없음
부담금(년)	연간 추계액 X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 추가금
퇴직급여수준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제도와 동일)	적립금총액 ± 운용수익	퇴직급여 이전 금액 ± 운용수익
수수료 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
운용지시	사용자(회사)	가입자(근로자)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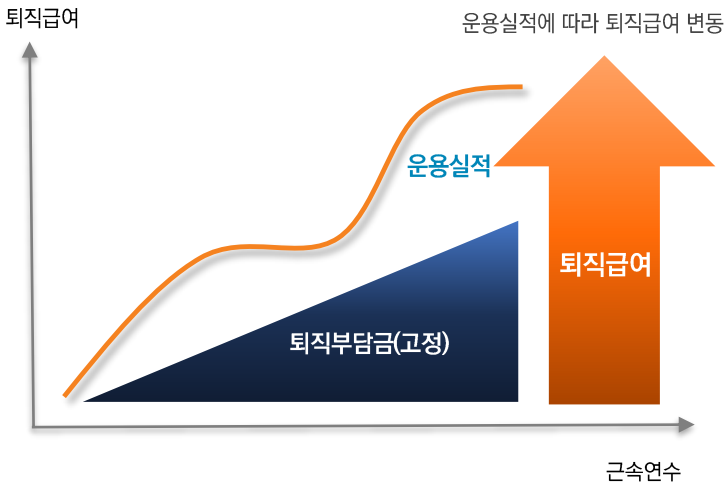
참 고

- 임금총액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퇴직급여 산출에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퇴직급여 산출에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확정기여형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근로자가 수수료 부담(단, 노사간 협의에 따라 사용자 부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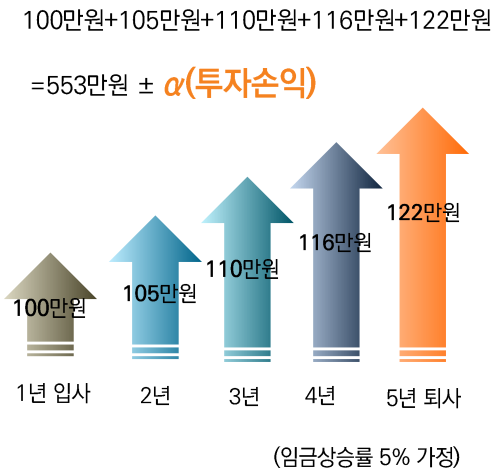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특징

사용자(회사)의 퇴직급여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별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운용결과에 따른 퇴직급여 변동



DC제도에서 퇴직급여는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의 의	적 용
평균임금	$\frac{\text{(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text{3개월 간 총일 수}}$	DB(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출
임금총액	$\frac{\text{연간 임금총액}}{12}$	DC 제도 퇴직급여 산출

- 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 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 등
- ※평균임금과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산입하나, 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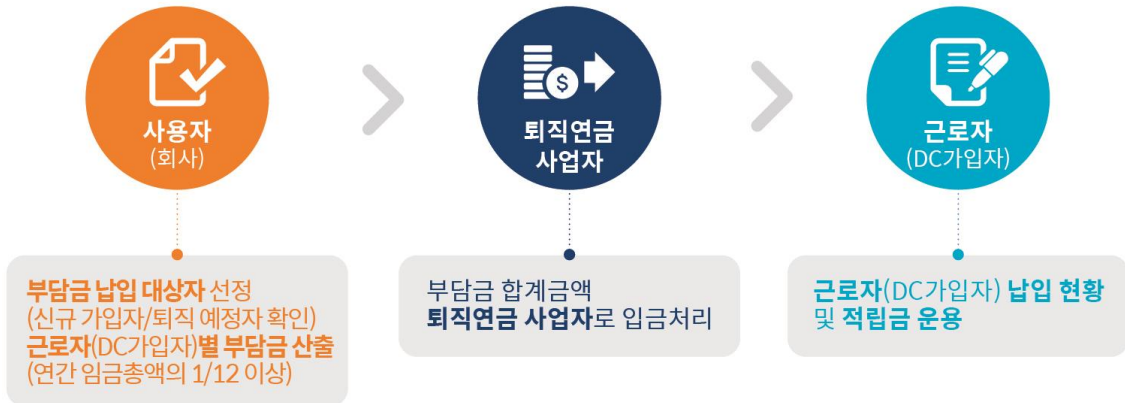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부담금 납입

사용자(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해야 하며 지연 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외 근로자 본인이 희망 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으며, 납입한 부담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주기** :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용자부담금 납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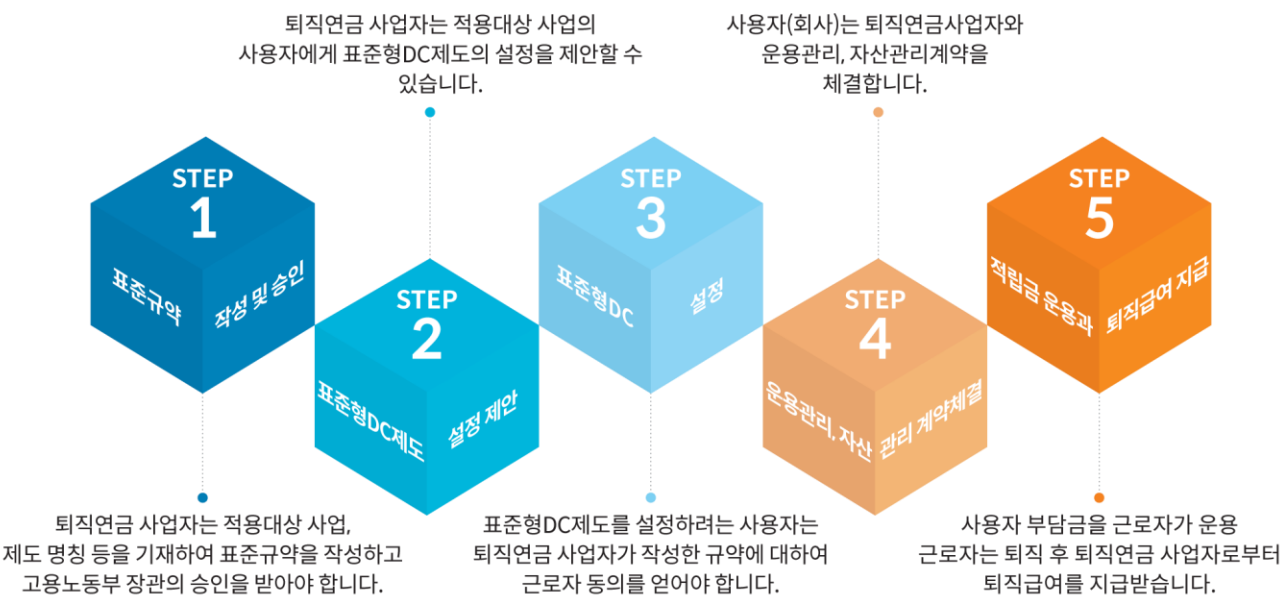
※ DC가입자 납입 현황 : 납입 현황은 당사 홈페이지, m.All(앱), 가입자별 제공되는 별도 안내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지연이자

지급사유	회사가 산정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조)
지연이자율	납입기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 퇴직 후 14일 다음날 ~ 납입일 : 연 20%
지연이자 제외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형DC제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DC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을 각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적용 받게 되므로 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준,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표준형 DC제도 표준규약 기재사항	-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고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동일 사업에 복수의 표준형 DC제도 또는 표준형DC제도와 일반DC제도를 동시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접수된 퇴직급여 청구 서류를 심사한 후, 퇴직급여 전액을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참 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등

퇴직급여 직접청구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근로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구비서류(①,② 중 택 1)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상실일 확인을 위함)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자격상실일 확인을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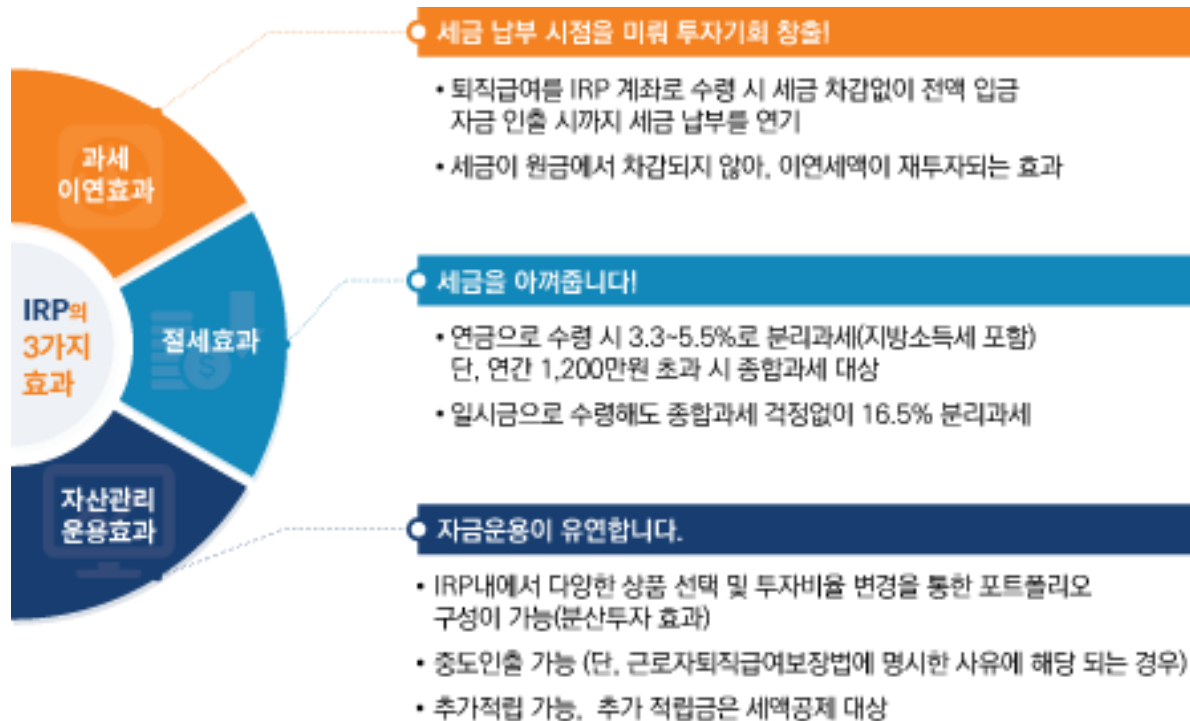
IRP입금

① 확정급여형(DB) : 당사 IRP로만 이전 가능

② 확정기여형(DC) : 당사, 타사 IRP로 이전 가능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적립금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납입한도	주1) 연간 1,800만원 한도
수령요건	주2) 가입기간(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평가금액/(11-수령연차)X120% ※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부터 시작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해 주3) 최대 16.5%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시 과세	주4)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한도	주5) 연간 1,200만원 한도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액에 한함(퇴직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 과세(중도해지포함)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or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무조건 분리과세)

주1) 퇴직연금 DC, 연금저축 개인부담금 포함

주2) 퇴직급여 입금 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주3) 단,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 13.2%

주4)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주5) 연간 1,200만원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음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개인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개인 부담금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종합소득)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세액공제율	최대 16.5%	최대 13.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400만원 IRP 합산 700만원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IRP 합산 700만원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0년~2022년 한시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원천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
퇴직금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퇴직소득세율 ×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 × 6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분류과세
추가납입 (세액공제O)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3.3%*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추가납입 (세액공제X)	과세제외	

* 연금소득세(수령나이 기준) : 만 55세~69세 → 5.5%, 만 70세~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연금수령 vs 일시금 수령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이 경감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수령
세금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시 세금 = 일시금 수령액 × 퇴직소득세율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 연금 수령액 × 퇴직소득세율 × 70%(or60%)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퇴직소득세 산정방식

퇴직소득	
-	①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연분)
×	환산 12배수
환산급여	
-	②환산급여차등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연승)
÷	환산 12배수
퇴직최종산출세액	

①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퇴직소득 산출세율

퇴직일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1.1 ~ 2016.12.31	종전 규정 산출세액 × 80% + 개정 규정 산출세액 × 20%
2017.1.1 ~ 2017.12.31	종전 규정 산출세액 × 60% + 개정 규정 산출세액 × 40%
2018.1.1 ~ 2018.12.31	종전 규정 산출세액 × 40% + 개정 규정 산출세액 × 60%
2019.1.1 ~ 2019.12.31	종전 규정 산출세액 × 20% + 개정 규정 산출세액 × 80%
2020.1.1 이후	개정 규정 산출세액 × 100%

소득세율

과세표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1,200만원 이하	6%	6%	6%
1,200~4,600만원 이하	15%	15%	15%
4,600~8,800만원 이하	24%	24%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35%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8%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0%	42%

※지방소득세 제외

담보대출 ·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 ·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 및 구비서류

한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사본)

담보제공	중도인출
50%	100%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사본)

담보제공	중도인출
50%	100%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구비서류 :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객관적 치료기록, 임금총액 증빙서류, 의료비지출증빙영수증

담보제공	중도인출
50%	100%



최근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구비서류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사본)

담보제공	중도인출
50%	10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비서류 : 자연재난피해상황확인서 등 물적·인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보제공	중도인출
50%	100%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발생 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은 DC, IRP제도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관련 고시 미확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담보제공 및 담보대출 미시행)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법의 개정 또는 당사 정책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추가서류 및 발급 서류의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프로세스



근로자

중도인출 사유 확인
필요 서류 제출



사용자
(회사)

서류확인 및
중도인출 신청



퇴직연금
사업자

서류심사
상품 매도 후 지급

계약이전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이전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타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형 IRP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계좌이체

퇴직,개인연금 간 연계를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대상

- 만 55세 이상인 자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단,이연퇴직소득이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5년 미경과시에도 허용)



DB형,DC형 계약이전제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폐지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다음과 같은 사용자(회사)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사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또는 규약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조치사항	• 가입자에게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등을 공지 게시 • 퇴직급여 지급 요청, 적립금 운용, 가입자교육 실시 등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 이행을 위한 조치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조치
효과	• 부담금 납입 및 급여지급능력 확보 등의 업무는 이행되지 않음 •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음 •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재적용됨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회사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 가능
사용자 조치사항	지체없이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개월내 폐지신고서 제출 • 가입자 통지 (퇴직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 등) •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부담금 납입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
효과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어 받은 것으로 봄 • 폐지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선정



- 1) 디폴트옵션 승인 :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③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 2) 사용자에게 제시 : 상품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자산배분현황, 가입자 보호장치 등을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으로 안내
- 3) 위의 2) 사용자 제시방법과 동일하게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주요 정보를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으로 안내



디폴트옵션 적용

기존에 운영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¹⁾

Opt-in(옵트인) :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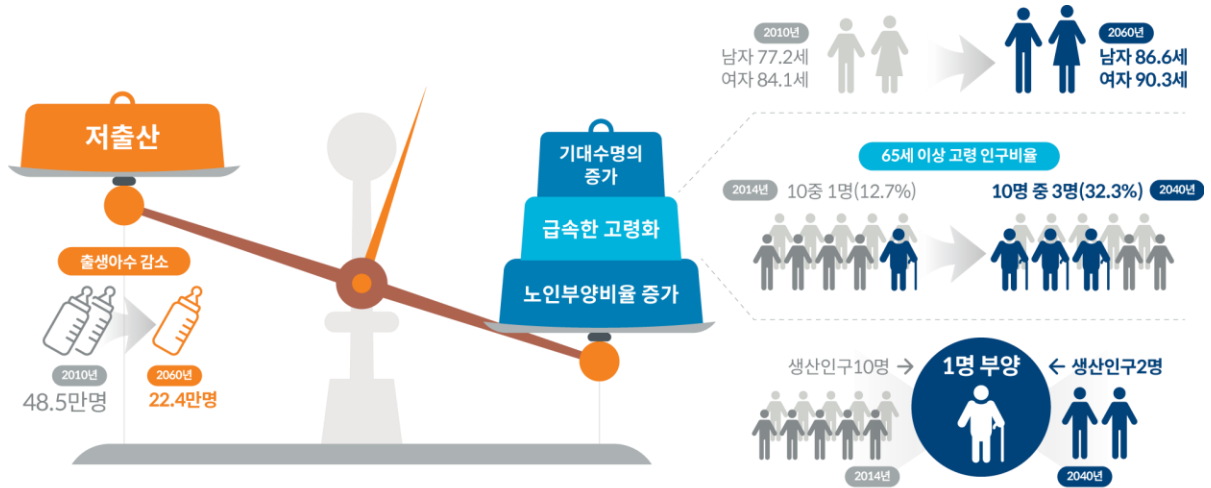
Opt-out(옵트아웃) : 디폴트옵션 운용 중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 1) 동일한 상품의 납입 주기로 인해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만기시에만 대기기간(4주+2주)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도래시에는 즉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노후설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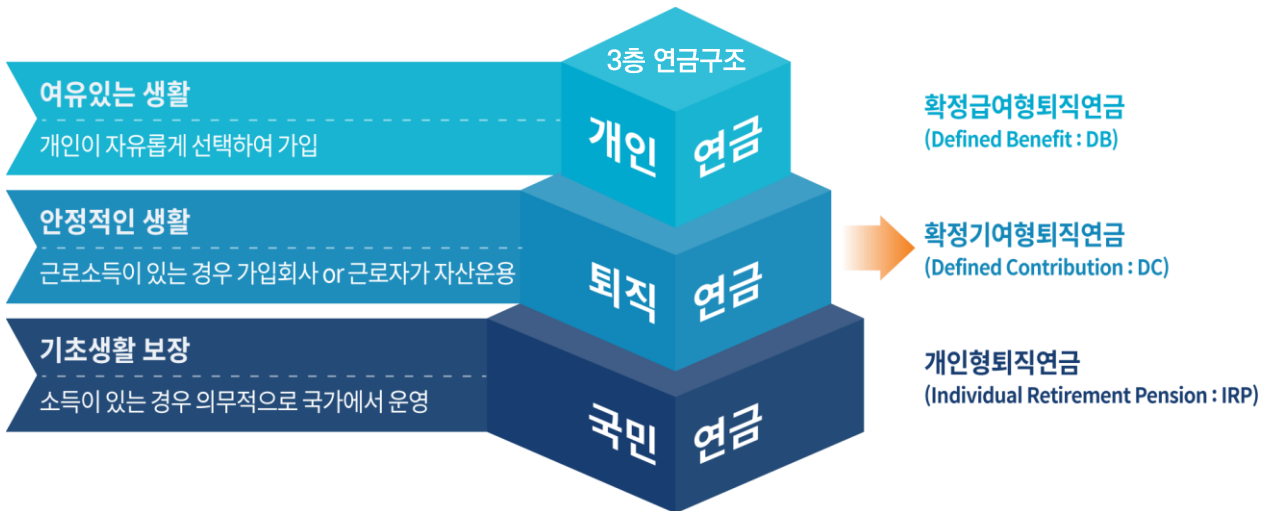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데 반해, 저출산과 생산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면 보다 통합적인 관점의 은퇴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추계교실-통계청자료]

3층 연금 구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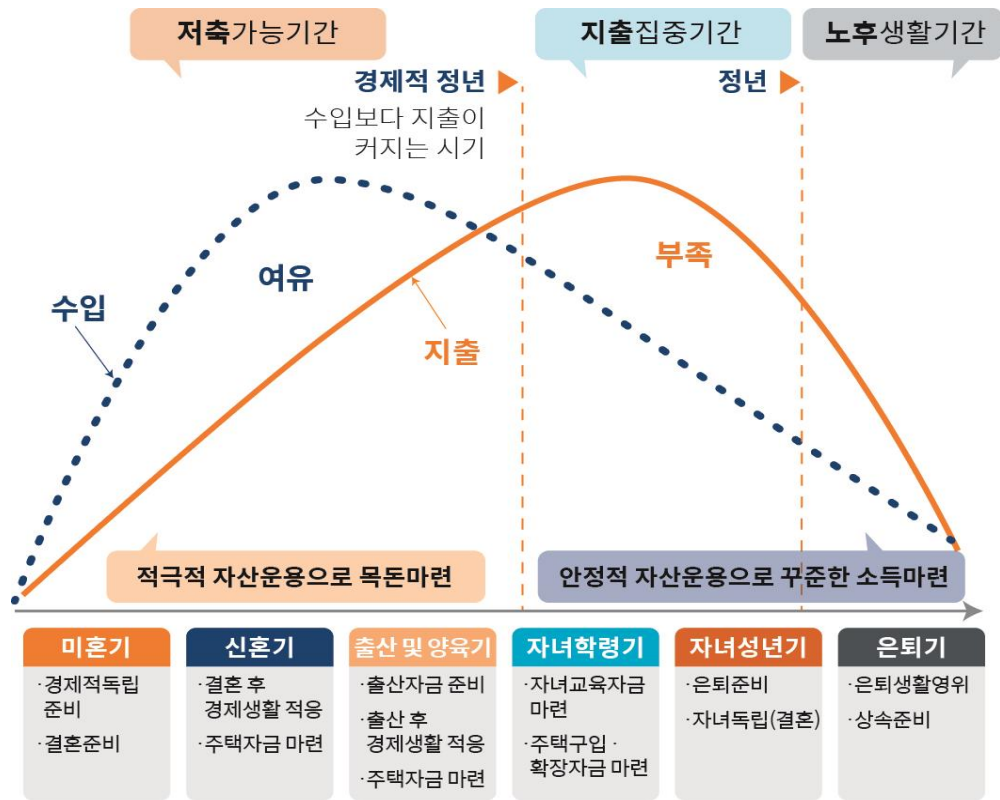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기댈 수는 없습니다. 건실한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 연금보험료 납부 시 본인의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목표

연령대별 라이프이슈에 맞춰 재무목표를 세우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산·부채를 관리함으로써 평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노후연금재원에 기여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은 적립식 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연금 투자원칙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를 위한 올바른 투자 가이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연령, 투자 목표, 실현 가능한 투자기간, 위험수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자산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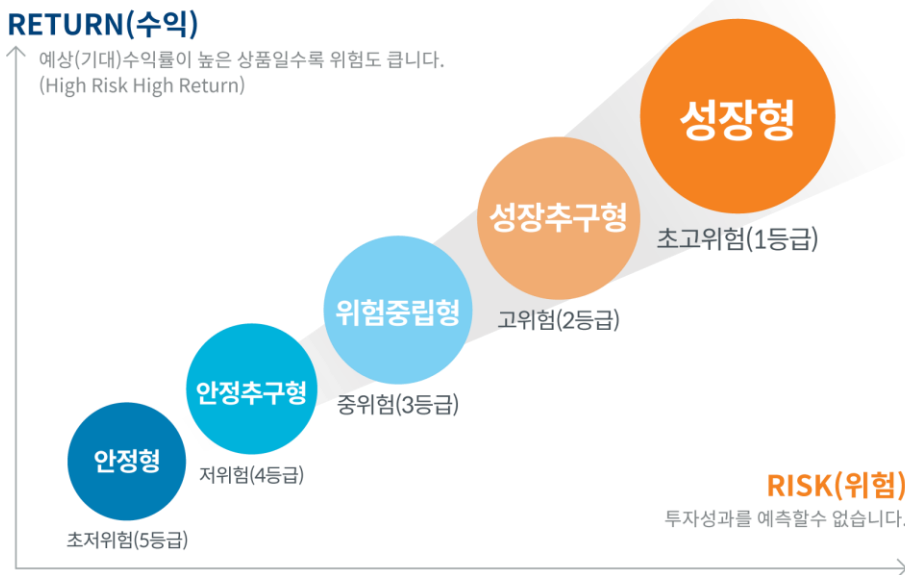
상품 선택 시 투자자정보확인을 통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기대 수익에 대하여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상품선택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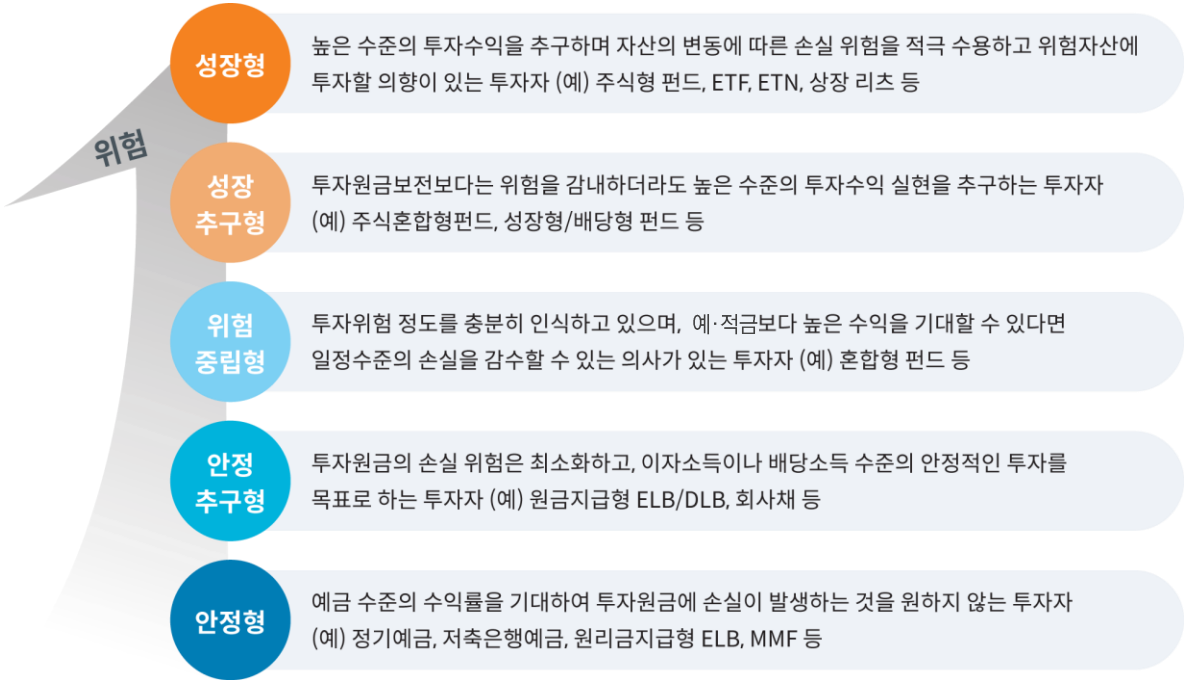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 예상(기대)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수익률은 예상(기대)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별 자산구성 및 투자위험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구성

평안한 노후연금재원에 기여할 퇴직연금의 운용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절한 상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립금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 상품

적립금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상품은 크게 원리금지급형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지급형상품

- (저축)은행이 제시한 약정 금리를 만기에 지급, 보수 없음
- DC/IRP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 만기시 자동재예치

-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로 가입자에게 약정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 보수 없음
- 투자위험: 발행사의 신용위험
- 만기 시 자동 상환

정기예금
저축은행예금

원리금
ELB/DLB

퇴직연금
투자상품

펀드

ETF
ETN
상장리츠

실적배당형상품

- 펀드 유형에 따라 채권, 주식 편입 비율이 나주어지고 해당 운용실적으로 손익이 산출.
- 펀드 별 보수 상이
- 투자위험: 시장 위험 등

- ETF(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 ETN(Exchange Traded Note): 거래소에 상장되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
 - 투자위험: 가격변동위험 등
- ※ 상장리츠는 DC/IRP제도에서 거래가능

참고

- 펀드의 투자위험, 보수(운용보수, 판매보수 등), 환매수수료, 매매기준가 적용일 등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홈페이지의 상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지급형상품의 특별·일반해지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상이하므로 약관 또는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중 고령자(65세이상) 및 부적합(부적정)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매수 시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2,3』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상품의 보수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29조』상의 운용/자산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퇴직연금 온라인 서비스 안내

퇴직연금은 장기자산이므로 꾸준한 관심을 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접속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1

대표 홈페이지 접속
퇴직연금 잔고 클릭

2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상품 매매 시 공인인증서 필요)

!

‘퇴직연금 간편 조회’에서는
로그인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한 자산현황과 입금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Mirae Asset Securities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like 'MY자산', '뱅킹/대출/청약', '금융상품', '연금자산', '투자정보', '서비스 신청/변경', and '이용안내/문의'.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연금자산' (Pension Assets) and lists various services. A '로그인' (Login)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n orange box, showing options for '매매 로그인' (Trade Login) and '조회 로그인' (Inquiry Login). Below the login section, a '퇴직연금잔고' (Retirement Savings Balance) icon is highlighted with an orange box and an arrow pointing to the login section.

홈페이지와 앱에서 퇴직연금 온라인 동영상 가입자교육 학습 가능 !



퇴직연금 온라인교육 동영상 Contents

- 1차시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2차시 퇴직연금제도 유형의 특징
- 3차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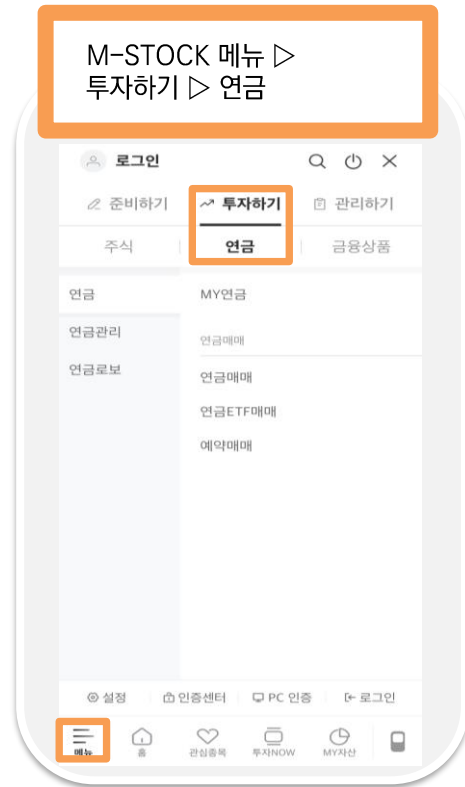
학습방법

- 홈페이지 : 연금자산>MY퇴직연금>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교육
- M-STOCK : 전체메뉴>연금>연금관리>퇴직연금가입자교육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퇴직연금 온라인 서비스 안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 미래에셋증권 M-STOCK 앱



연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블로그 검색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영업점 방문없이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평일 08:00~17:00)